

잔류성오염물질
측정분석 전문기관

☐ 지정
☐ 변경지정

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(변경 지정 10일)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
	소재지	전화번호	
	분석책임자		
	지정신청 항목		
	변경사항(내용)	변경 전	변경 후

「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」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
☐ 제14조의2제4항

☐ 지정
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을 신청합니다.
☐ 변경지정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지정신청의 경우 가.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실험실,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나.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(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,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,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) 다.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.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.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.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(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합니다)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